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9월 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입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상위법 변경(생활보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수정

III.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는 종로구 관할구역 안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9월 7일 종전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6조)과 일부 법률관용어를 정비(안 제10조제2항)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에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내용 중 현행조례 제16조제2항에서 청소수수료의 감면대상으로 별도 규정한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인 경우에도 생계 곤란자에 해당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판단되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연금·수당·보상금 지급이나 교육·취업·의료보호 및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차원에서의 지원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의 보상이라는 점에서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수료 감면의 조건이 되는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매우 모호할 뿐 아니라, 특히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가 제정(1992. 7. 25)된 이후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동 조항에 의한 수수료 감면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조항을 삭제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IV.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7181호)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지전 생활보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82호)

제6조 (보호대상자의 구분)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거택보호대상자·시설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한다.

1. 거택보호대상자는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들과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그 주거에서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보호를 받을 자를 말한다

※ 폐지전 생활보호법(법률 제5836호)

第3條 (保護對象者の 범위) ①이 법에 의한 保護對象者는 扶養義務者가 없거나 扶養義務者가 있어도 扶養能力이 없거나 扶養을 받을 수 없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最低生計費를 감안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所得과 財産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保護對象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1. 65歲이상의 老衰者 / 2. 18歲미만의 兒童 / 3. 妊産婦 / 4. 疾病, 事故 등의 결과로 인하여 勤勞能力을 상실하였거나 障碍로 인하여 勤勞能力이 없는 者 / 5. 第1號 내지 第4號의 者와 生計를 같이하는 者로서 이들의 扶養, 養育, 看病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生活이 어려운 者

第7條 (보호의 種類) ①이 법에 의한 보호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生計保護 / 2. 醫療保護 / 3. 自活保護 / 4. 敎育保護 / 5. 解産保護 / 6. 葬祭保護

○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第5條 (遺族등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하여 報償을 받는 國家有功者의 遺族 또는 家族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配偶者 / 2. 子女 / 3. 父母 / 4. 成年男子인 直系卑屬이 없는 祖父母
5. 60歲미만의 男子 및 55歲미만의 女子인 直系尊屬과 成年男子인 兄이 없는 未成年弟妹 / 6. 削除<1994.12.31> / 7. 出嫁한 딸